

국토교통부훈령 제1551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
부훈령 제1149호, 2019. 1. 10.)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측정을 3회 거부한 경우 검사 공무원의 조치 사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 공무원의 단순 교육용으로 지정된 음주측정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정 및 교정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주세법」(법률, 시행 2021.3.1.)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주·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안 제11조)

철도종사자가 3회 이상 음주·약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입건 처리 또는 관할경찰서 고발조치외에 철도종사자 업무배제 근거조항 마련
나. 음주·약물측정 장비의 관리(안 제12조제2항)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기 위한 장비가 아닌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검정 및 교정 기간을 제외
다. 음주·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보고(안 제14조제3항)

검사 공무원의 음주·약물측정을 3회 거부한 철도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
라.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주세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2021.3.1.)사항을 반영하여 술에 대한 근거조항 개정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칙”을 “총 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검사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보 칙”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철도종사자”를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로, “위반의 행범으로 체포”를 “위반으로 형사 입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해당 철도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담당자(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을 기재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가”를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를 “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4개월마다”를 “4개월마다(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주·약물측정을 거부한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칙</u>	<u>제1장 총 칙</u>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 「주세법」 제2조제1 <u>호</u>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소변·모발 감정의뢰 등) ① <u>검사공무원</u> 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소변 또는 모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하여야 한다.	제9조(소변·모발 감정의뢰 등) ① <u>검사 공무원</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4장 보칙</u>	<u>제4장 보 칙</u>
제11조(음주·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및 약물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	제11조(음주·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 ① 검사 공무원은----- ----- ----- ----- ----- -----

우에는 법 제41조제2항 위반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거나 관할경
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음주·약물측정 장비의 관
리 등) ① 음주·약물측정 장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
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
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확
인·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성능 점검을 위하여 사전
결재(전자결재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

나. 검사 공무원의 교육용으
로 별도 지정된 장비의 경우

② 검사 공무원은 음주·약물 측
정결과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

-----위반으
로 형사 입건-----
-----.

② 검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형사입건 또는 고발 조치한 경
우에는 해당 철도종사자가 소속
된 철도운영사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을 기재
한다.

제12조(음주·약물측정 장비의 관
리 등) ① -----

-----.

1. 성능 점검을 위하여 사전 결
재(전자결재에 한한다)를 받
은 경우

2. 검사 공무원의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의 경우

② -----

하여 음주측정 장비는 4개월마다, 약물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체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교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음주·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약물측정 장비를 사용한 경우(제12조제1항제1호 따른 성능 점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음주·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4조(음주·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 보고) ①·② (생 략)

<신 설>

----- 4개월마다(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주·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주·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주·약물측정을 거부한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